

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51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10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부실채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‘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’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(출자)대상 : 신용보증기금

나.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외상대금 미수금 등 부실채권의 최대 80%까지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도모 및 연쇄도산 방지

다. 출자·출연 주요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5. 1월 ~ 12월
- 사업대상 :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당기매출액 30억 미만 영세중소기업
- 지원한도 : 업체당 최종 보험료의 70% 지원(최대 100만원)

3. 관계법령

가.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나.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(기본재산의 조성)

다.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(보험료 등 지원)

4. 예산수반사항

가. 출연 예정금액 : 50백만원 이내

나.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

(단위: 백만원)

2025년도 시 출연금	2024년도 시 출연금	전년대비 증감액
50	25	25

소관 실·과·소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기업지원과장 최재욱
	팀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팀장 하세진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서기 강도연(☎2316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(보험료 등 지원)

제10조의2(보험료 등 지원)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방지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
 - 지원대상 :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당기매출액 30억 미만 영세중소기업
 - 출연대상 : 신용보증기금
 - 지원한도 : 업체당 최종 보험료의 70% 지원(최대 100만원)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외상대금 미수금으로 인한 중소기업 연쇄도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출연금 편성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계
총 소요액	50,000	52,500	55,125	57,882	60,776	276,283
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	50,000	52,500	55,125	57,882	60,776	276,283

※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- 예산과 협의필

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-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장 최재욱 팀장 하세진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	
세 입	50,000	52,500	55,125	57,882	60,776	276,283	
지방세 수입	50,000	52,500	55,125	57,882	60,776	276,283	
세 출	50,000	52,500	55,125	57,882	60,776	276,283	
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	50,000	52,500	55,125	57,882	60,776	276,283	
재원 조달	50,000	52,500	55,125	57,882	60,776	276,283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50,000	52,500	55,125	57,882	60,776	276,283
	지방세수입	50,000	52,500	55,125	57,882	60,776	276,283
	세의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그 밖의 사항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관계법령 발취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□ 「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, 경기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 및 시·군의 출연금

2. 기금운용 수익금

□ 「중소기업기본법」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□ 「신용보증기금법」

제6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

□ 「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기업활동 촉진·지원 사업)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 및 기업종사자에 대한 행정·재정 지원사업

제10조의2(보험료 등 지원)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